
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법 개정 시행 안내

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체교육 시 사내 강사 자격기준 강화

○ 개정사항

- 「장애인고용법」 개정(‘20.6.9)으로 2021. 1. 1.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자격요건(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과정 수료)을 갖춘 사내 강사가 하여야 함
 - * 기존에는 사업주 자체교육 실시 시 별도의 자격기준 없었음

○ 사내 강사의 자격기준

-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과정 수료한 자(사내 강사)

○ 사내 강사에 의한 자체교육 방법

교육방법	세부 내용
집합교육	사내 강사가 교육을 실시해야 함
원격교육	사내 강사가 직접 출연하거나,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해야 함
체험교육	사내 강사가 사전에 강의계획안을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

○ 교육과정 개설 안내

-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 홈페이지(www.kead.or.kr)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(edu.kead.or.kr)을 통해 안내할 예정('21년 1월경)

○ 근거 법령

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5조의2제3항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 하여야 한다.
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시행령 제5조의2제3항 법 제5조의2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”란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 를 말한다. 이 경우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은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.
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시행규칙 제4조의4제1항 제4조의4(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및 위탁교육 방법) 법 제5조의2제3항 및 제5조의3제3항에서 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”란 각각 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 를 말한다.

○ 문의처

-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인식개선센터 (대표전화 ☎ 1588-1519)
-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대표전화 ☎ 044-202-7487, 7485)

붙임

자체 교육 시 사내 강사 활용 교육 일문일답

Q1. 상시 고용 근로자 수가 300인 사업주가 자체 교육 시 변경된 사내 강사 기준 적용 시기는 언제인가요?

☞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Q2. 사내 강사 양성 과정 운영 시기는 언제인가요?

☞ 2021년 1월 중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 홈페이지(www.kead.or.kr)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(edu.kead.or.kr)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.

☞ 사내 강사 양성 과정 운영 : '21. 3월 ~ 6월

☞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집합교육, 화상교육 상호 탄력 운영

Q3. 상시 고용 근로자수가 300인 이상 사업주의 경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
☞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,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전문강사나 사내 강사에 의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.

※ 사내 강사가 전문강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, 별도 사내 강사 자격요건 취득할 필요 없이 전문강사로서 교육 실시 가능

※ 외부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집합교육, 원격교육 등을 실시하는 경우 사내강사가 아닌 외부교육기관의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 실시 가능

Q4. 같은 그룹이나 법인이 다른 경우 사내 강사의 활동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?

☞ 같은 그룹이라도 법인이 다른 경우 각각의 법인 기준으로 사내 강사의 활동범위가 정해지며, 상호 지원할 수 없습니다.

Q5. 공단의 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내 강사의 자체 교육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
☞ 사내 강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정한 교육방법(집합, 원격, 체험교육) 형태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.

☞ 집합교육 : 사내 강사는 사업체에서 직접 집합교육 실시

☞ 원격교육 : 사내 강사가 직접 출연하거나,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원격교육가능 학습시스템(LMS)을 제작하여 교육 실시

☞ 체험교육 : 사내 강사가 공단에 승인을 득한 강의계획으로 체험형태의 교육 실시